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어기구 · 정춘생 · 손명수
주철현 · 박균택 · 김태선
허성무 · 김주영 · 김의겸
김병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 · 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, 프랑스,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‘노동이사제’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.

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.

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

장하고,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).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임명한다”를 “임명하되,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임원의 임명) ① ~ ③ (생 략)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<u>임명한다</u> .	제16조(임원의 임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임명하되,</u> <u>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</u> <u>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</u> <u>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</u> <u>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</u> <u>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</u> <u>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</u> <u>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</u> <u>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</u> <u>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</u> <u>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</u> <u>한다.</u>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